

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

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「2022년 구리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1. 7.
구 리 시 장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명: 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

나. 사업량: 3,800대(※ 일반-3,780대 / 저소득-20대)

다. 접수기간: 2022. 1. 17. ~ **선착순 접수 후 예산소진시 조기마감**

라. 접수방법

1) 현장접수: 구리시청 별관 환경과

2) 등기우편: 마감 당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

※ 보내실 곳: 구리시 아치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3층 환경과

마. 지원대상: 2022년에 **9년 이상** 사용한 노후 보일러(※ 2013.12.31. 이전 제조/설치된 보일러)를 **가정용 저녹스 보일러¹⁾**로 교체하는 구리시 주택(또는 건축물) 소유자 및 세입자

※ 9년 이상 노후 보일러 확인 방법: ① 시공표지판 및 제조명판 사진

② 도시가스 연결 기록 확인 등

※ **9년 이상 노후 보일러임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,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**

※ **2021년 교체 건은 지원대상이 아님**

바. 지원금액

1) 일반가정-10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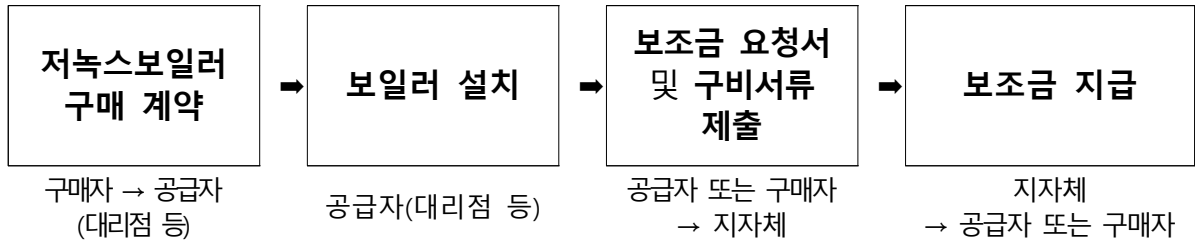
2) 저소득가정-60만원

※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부 제출 시

1) 시간당 증발량이 0.1톤 또는 61,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

2. 신청 방법

가. 지급절차



- 보조금 신청자(구매자)와 공급자²⁾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매 계약서(또는 견적서), 영수증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나. 제출서류

- ① [필수]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. ⇒ [서식1]
- ② [필수]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.
- ③ [필수] 세금계산서, 영수증(현금영수증, 카드명세서)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1부.
※ 간이계산서 불가
- ④ [필수]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.
※ 신청인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
※ 공급자의 통장 사본일 경우, 사업자등록증 1부도 함께 제출
- ⑤ [필수]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. ⇒ [서식2]
 - ▶ 교체 전 보일러 사진
 - 제조명판 또는 시공표지판을 통해 **기존 보일러의 제조일자**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
 - ※ 오래되어 날짜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훼손된 상태를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도록 찍어서 제출하고, 이차적으로 도시가스 신고 기록을 확인하여 시공일자 확인
 - ▶ 시공 중인 현장 사진
 - 기존 보일러 제거 후, 신규 보일러 설치 전 사진(시공 할 벽 등)
 - 2022년에 설치함을 알 수 있도록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거나 신문, 다른 휴대폰 화면 등을 같이 찍어서 설치 날짜가 증명되도록 찍어야 함
 - ▶ 설치 완료된 보일러 사진
 - **‘시공표지판’과 ‘제조명판’의 내용**(시공일, 제조일, 제조자명, 모델명, 기종, 제조번호 등)이 **확인가능하도록 찍어야 함**

2) 보일러 대리점,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·판매하는 자

- ⑥ [필수] 설치장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. ※ 소유자 확인 목적
- ⑦ [필수]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.
⇒ [서식3](신청자, 공급자 모두 서명)
- ⑧ [필수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. ⇒ [서식4](신청자 서명)
- ⑨ [선택] 세입자 신청시, 전·월세 계약서 1부.
- ⑩ [선택]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.
※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하나

3. 예외 및 유의 사항

- 공공기관과 공공시설*,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** 공동주택 및 9년 미만 사용 보일러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*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말함.
**「주택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「주택법」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.
- 2022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에 한하며, 2021년도 설치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없다.
-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(전·월세 계약서 첨부)
- 공급자가 보조금 신청 시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, 계약서에는 ①보조금 지원 금액, ②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*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구매자가 보조금 신청 시 공급자는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, 계약서에도 명시하여야 한다.

4.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안내

-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,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한다.

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

(예시) `21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`22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(사진 조작, 영수증 재발급 등) 등

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

④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(예시) 2021. 3. 1. 이전에 설치한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 21. 4. 1. 이후에 보조금 신청한 경우

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,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·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(콘덴싱)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

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5. 보조금 지급

-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, 설치 후 제출하는 설치확인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.

***예산 소진시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없음.**

****9년 이상 노후 보일러 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,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없음.**

6. 기타 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22년도 「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름.
- 문 의: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(☎031-550-2314)

[제1호 서식]

보조금 지급 요청서			
사업명	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		
신청인	성명		연락처
	주소		
설치장소 개요	소유자		연락처
	주소		
보일러 교체 개요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 보일러 교체 /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축건물 신규 설치		
지급요청금액	<input type="checkbox"/> 10만원 : 일반 / <input type="checkbox"/> 60만원 : 저소득층		
입금 희망은행	은행명		
	예금주		
	계좌번호		
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. 2022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구리시장 귀하			
<p>【위임사항】 (*공급자 또는 세입자 신청의 경우)</p>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()에게 위임합니다. - 대리인(공급자): (서명 또는 인), 생년월일: - 위임자(보조금 신청인): (서명 또는 인), 생년월일: - 위임자(주택소유자)(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): (서명 또는 인), 생년월일:			
<p>* 구비서류</p> ①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. ②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. ③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(사진, 영수증 포함) 1부. (*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) ④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.(※소유주 확인) ⑤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. ⑥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. ⑦ [선택] 전·월세 계약서 1부. ⑧ [선택]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. ⑨ [선택] 임대계약 관련 동의서 1부.(※ ⑧번 제출시 필수 제출)			

[제2호 서식]

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

※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 제출

1.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

○ 제작사 :	○ 판매사 :
○ 모델명 :	○ 보일러 용량 : Kcal/hr
○ 제조번호(S/N) :	○ 설치 대수 :

2. 설치일자 : 2022년 월 일

3. 설치장소(주소) :

4. 별첨 : 세금계산서, 영수증(현금영수증, 카드영수증)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

※ 간이영수증은 불가함.

가. 보조금을 신청인이 수령: 견적서와 동일한 금액의 결제영수증

나. 보조금을 공급자가 수령: ① 보조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1부.

② 나머지 금액(견적서 금액)에 대한 신청인 결제영수증 1부.

5.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

<p>① 기존 보일러 사진</p> <p>-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통해 기존보일러의 제조일자 또는 시공일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</p>	<p>② 시공중인 현장 사진</p> <p>- 기존 보일러 제거 후 신규 보일러 설치 전 현장사진(설치 할 벽면 등)</p> <p>- '22년에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(※ 카메라어플(DAYMINE 등) 이용 및 신문, 다른 휴대폰 화면 등을 함께 찍어서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)</p>
<p>③ 설치 완료 된 보일러 사진</p>	<p>④ 설치 후 제조명판 사진</p> <p>- 제조명판: 모델명, 기종,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</p>

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.

2022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공급자 : (서명 또는 인)

□ 구비서류 목록

연 번	관 련 서 류	구비여부(O/X)
1	보조금 지급 요청서 (서식참조)	
2.	계약서 또는 견적서	
3.	계약이행증빙서류 ※ 세금계산서, 영수증(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) 등 ※ 간이영수증 X	
4.	통장사본(신청인 또는 공급자)	
5.	설치확인서 (서식참조) ※ 사진 첨부 필수	
6.	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	
7.	서약서 (서식참조)	
8.	정보제공 동의서 (서식참조)	
9.	[선택] 전월세 계약서	
10.	[선택] 저소득층 증명서류 ※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부.	